

議案番號	第 309 號
議決年月日	'95. 12. 7. (第40回定期會)

議決事項	원안 가결	
------	----------	---

## ‘96年度地方債發行計劃(案)

(固城共用旅客自動車터미널移轉事業)

提出者	固城郡守
提出年月日	1995. 11. 21.

# '96年度地方債發行計劃(案)

議案 番號	309
----------	-----

提出年月日 : 1995. 11. 21.

提出者 : 固城郡守

## 1. 提案事由

- 地方自治法 第115條의 規程에 의거 '96年度 固城共用旅客自動車터미널 移轉事業에 所要되는 資金을 地方債 發行으로 調達하기 爲하여
- '96年度 豫算案 承認을 得하기에 앞서 '96年度 地方債發行計劃(案)을 議決받고자 本案을 提出합니다.

## 2. 主要骨子

### 가. 地方債 發行計劃

- 借入額 : 2,000百萬원 ('96年度 1,000百萬원, '97年度 1,000百萬원)
- 借入線 : 慶尙南道 地域開發基金 特別會計
- 利率 : 年利 8%
- 償還條件 : 3年 거치 5年 均分 償還
- 償還財源 : 郡費(數地賣却 資金)

나. 內務部長官 承認 : '95. 10. 31. ('96年度 借入額分)

#### 다. 地方債發行 事由

- 現 旅客自動車터미널은 市街地 中心部에 位置하여 交通難을 加重시키고 있음은 물론 地域 均衡發展을 阻害하고 있어,
- 이를 既都市計劃施設(自動車停留場)로 決定되어 있는 固城邑 松鶴里 416-2番地 一團에 經營收益事業 方式으로 敷地를 買入 造成하여 民資誘置 移轉하므로써,
- 交通難과 利用 불편을 解消하고 固城邑을 中心으로 하는 經濟活性化를 提高함과 同時에 現代的 旅客自動車터미널施設을 造成코자 함,
- 따라서 터미널 敷地買入 및 造成에만 所要되는 2,000百萬원에 對하여 地方債을 發行코자 합니다.

### 3. 關聯法令

#### ○ 地方自治法 第115條(地方債務 및 債券管理)

- 地方自治團體長은 그 地方自治團體의 恒久的인 利益事業 等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範圍안에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地方債을 發行할 수 있다.

### 4. 事業計劃書 : 別添

# 固城共用旅客自動車터미널 移轉事業 計劃

## I. 事業概要

### 1. 필요성(배경) 및 현황

#### ○ 필요성(배경)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성공용정류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6도시계획도로(송학로)개설사업 시행시 정류장부지를 관통하므로 터미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절박한 시점에 도달하여 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현대식 복합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성키 위함.

#### ○ 현 터미널내역

<면적단위 : ㎡>

부 지 면 적	건 물 면 적			1일 이용 승객평균	차량이용(횟수)			비 고
	계	지하 1	지상 1		지상 2	계	직행	
5,131	1,349.82	165.00	588.44	596.38	4,000명	351	197	154

#### ○ 도시계획도로(송학로) 개설시 터미널부지 내역

<면적단위 : ㎡>

종부지 면 적	사실상 도부 면적	도 계 도면적	시 획 로 인 정 면 적	잔 여 면 적					잔여면적이 기준면적을 상회하나, 부지가 3등 분임으로 터미널기능 의 상실이 예상됨.	
				계	활 용 가 능 면 적					활용 불능 면적
					소 계	건 획 면 적	정류가 능 면적	정류불 능 면적		
5,131	372	1,637	3,122	2,260	588.44	1,066	605.56	862		

### 2. 추진방향

○ 경영수익사업으로 '96. ~ '97. 간 지역개발기금을 용자(지방채)받아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 조성하고 조성된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민자로 터미널 시설을 조성·완료한 후 공용개시토록 함.

### 3. 종사업계획

- 위 치 :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의 5필지('93. 11. 25. 도시계획시설결정지)
- 사업기간 : 1996년 4월 ~ 1998년 6월

○ 사업량

- . 부지매입 : 7,900㎡
- . 부지조성 : 7,900㎡
- . 터미널시설 조성 : 건물 및 정류시설(규모 및 예상사업비 미정)

○ 사업비 : 2,050백만원(부지매입 및 조성사업비)

└ 지방채 : 2,000백만원  
 └ 순수군비 : 50

○ 연도 및 공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공종별	합 계		1996년도		1997년도		'98년도 이후(민자)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050		1,050		1,000	민자부분은 기본설계	
보상비	7,900	1,700	4,650	1,000	3,250	700	용역후 확정계획으로	
공사비	7,900	300	-	-	7,900	300	미정임.	
용역비	1식	50	1식	50	-	-		

4. 사업주진 경위

- '95. 7. 20. :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내부방침 결정
- '95. 7. 31. : '96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신청(→내무부)
- '95. 10. 31. : '96년도 지방채발행 승인(내무부)

5. 사업주진체계

내 용	관 련 법 규	관 련 실 과
○ 기본설계용역발주 : 시설규모, 교통체계, 소요 사업비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기 획 실 재 무 과
○ 1차 사업시행 : 부지매입 및 조성, 사업자선정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법 제25조	도 시 과
. 공람공고 : 지방일간지 공고(14일간)	- 제25조	-
. 인가고시 : 실시계획 인가고시	- 제26조	-
. 부지매입(감정평가 실시후 보상협의 매입 → 불응자는 토지수용)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수용	
. 부지조성공사 시행 → 설계도서에 의함(성토, 상하수도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미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신문 등)</li> <li>. 사업희망자 접수(부지 매입 응찰자)</li> <li>. 사업자 선정 : 응찰자중 최고액 제시자</li> <li>. 터미널 사업면허</li> </ul>	<p>국가물양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 및 제6조</p>	
<p>○ 2차 사업시행 인가 : 터미널시설 조성 및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시행인가</li> <li>. 건축허가</li> <li>. 건축 사용검사</li> <li>. 터미널시설 완성검사</li> <li>. 공용개시</li> </ul>	<p>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p> <p>건축법 제8조</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조</p> <p>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8조</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조</p>	도 시 과

## II. 細部實踐計劃

<세부사업>

'95 년도

-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내부방침 결정 ----- '95. 7. 20.
- '96년도 지방채발행승인신청(→내무부) ----- '95. 7. 31.
- '96년도 지방채발행승인(내무부) ----- '95. 10. 31.
- '96년도 지방채발행승인안 제안(→군의회) ----- '95. 11월 중

'96 ~ '97년도

- 기본설계용역발주 : 규모, 교통체계, 중소요사업비 등 ----- '96. 4 ~ 8월 중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 '96. 11월 중
- 공람공고 : 지방일간지 공고(14일간) ----- '96. 11월 중
- 인가고사 : 실시계획 인가고사 ----- '96. 12월 중
- 1차 사업시행(부지매입 및 조성, 사업자 선정) ----- '96. 12월 ~ '97. 6월간
- . 부지매입(감정평가 실시후 보상협의매입)  
→불응자는 토지수용

- 부지조성공사 시행(설계도서)
- 터미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신문 등) 및 접수
- 사업자 선정 및 터미널 사업면허 : 응찰자중 최고액 제시자

'97 ~ '98년도

- 2차 사업시행 인가(터미널시설 조성) ----- '97. 7월 ~ '98. 6월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시행인가 및 건축허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조성 → 사업자
  - 건축물 사용검사 및 터미널시설 완성검사
- 공용개시 ----- '98. 7월 중

### III. 問題點

- 협의취득 애로(옹지매수 난망)
- 터미널사업 희망자(민자투자 희망자)가 있을 지 여부 불투명
- 군재정의 빈약으로 이전 대상지 터미널 주변도시계획도로 확장애로(미확장시 차량의 터미널 진입 및 승객 활용 애로)
  - 사업량 : L = 270m, B = 10m → 20m(중로 1류 8호선)
  - 사업비 : 1,100백만원(보상비 800백만원, 공사비 300백만원)
- 예정 터미널부지의 협소로 상가지역 및 택시주차장 등 조성 애로

### IV. 對 策

- 감정평가역에 의하여 6필지임을 감안, 전행정력을 동원 토지소유자와 협의취득하되 계속 불응자는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 강제수용
- 터미널사업의 상업성(부대사업)의 대대적 홍보(중앙일간지 등)
- 도시계획도로 확장 소요사업비 전액 도비지원 건의
- 주변지역 도시계획변경 및 개발사업의 동시 추진(도시과)

### V. 期待效果

-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도모, 고성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
- 고성읍을 기점으로 하는 고성군농어촌버스 운행활성화로 편리한 교통망 확충
- 터미널시설 현대화로 주민이용 편의도모 및 관광객 확대유치와 이미지 개선

# V. 地方債 發行에 따른 收支分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996	1997	1998	1999	12000	2001	2002	2003
수입 (A-B)	177	-6	2,352	-40	-243	-439	-439	-419	-589
수입 (A)	5,097	1,008	3,562	120	117	105	83	61	41
항목	지방채	2,000	1,000	1,000					
	선수금								
	분양대금	2,500		2,500					
	발생이자	597	8	62	120	117	105	83	61
지출 (B)	4,920	1,014	1,210	160	360	544	522	480	630
항목	보상비	1,700	1,000	700					
	조성비등	350		350					
	원금상환	2,000				200	400	400	400
	이자상환	870	14	160	160	160	144	122	80

※ 1. 지방채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단, 2003년 상환완료시)

2. 이율 : 년리 8%

3. 지방채 차입시기

- 1차 : '96. 11월중

- 2차 : '97. 1월



位置圖

事業施行決定地



